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09호
2. 발 의 자 : 김수규 의원, 황인구 의원
3. 발의일자 : 2020. 10. 15.
4. 회부일자 : 2020. 10. 26.

II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내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III .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2.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4.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5.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6.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7.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의 연수기회 제공, 연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8.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9.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식재산 기본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김수규 의원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09호로 발의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의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19일에 공포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의해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운영 중이며¹⁾ 위원회에서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 점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

1)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원부 등이 위원부처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기반 및 신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1] 부처별 주요 지식재산 관련 업무

지식재산 창출	R&D, 기술표준, 권리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활용	가치평가, 금융, 사업화, 공정이용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공정위 등
지식재산 보호	기술침해 방지, SW 불법유통 차단	법무부, 문체부, 특허청, 법원 등
지식재산 기반	인력양성, 제도 개선, 국민 인식 제고	교육부, 문체부, 특허청 등
신지식재산	전통지식, 생물자원, 신기술에 따른 이슈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등

○ 이와 같이 현재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7년에는 지식재산의 한 분야인 발명과 관련하여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특히 「발명교육법」에서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²⁾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³⁾ 유·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교육의 한 분야로서 발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⁴⁾

2) 「발명교육법」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발명교육법」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 ‘실과(기술·가정)’ 진로선택과목에는 ‘지식 재산 일반’ 교과가 편성되어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명, 특허 출원 등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2]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지식 재산 일반’교과의 영역 및 내용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지식 재산 이해	지식 재산 가치	지식 재산은 발명, 특허, 지식 재산의 차별화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기초이다.	· 발명의 개념 ·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 지식 재산의 가치
	지식 재산권 이해	지식 재산권의 이해는 지식 재산의 중요성을 알고 지식 반의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소양에 기여한다.	· 지식 재산권의 종류 · 산업 재산권의 이해
지식 재산 창출	지식 재산 창출	발명 문제를 확인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결하는 일은 지식 재산 창출하는 역량이다.	· 발명 문제 확인 · 발명 문제 해결
		창출된 아이디어는 특허정보 검색 방법을 통하여 지식 재산 권리화의 기초이다.	· 특허 정보검색 이해 · 특허 정보검색 수행
	직무 발명 개념 및 제도를 이해하고 직업 생활에서 적용하는 일은 창조적인 직무 수행을 향상시킨다.	· 직무 발명의 이해 · 직무 발명 제도	
	지식 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 절차와 수행은 지식 재산 권리화를 통한 지식 재산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초이다.	· 특허 출원의 이해 ·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특허 명세서의 구성 요소 및 작성법의 이해는 지식 재산 권리화의 기초 역량이다.		· 특허 명세서 이해 ·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 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 재산보호	지식 재산의 침해와 분쟁에 관한 실천은 지식 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지식 재산 활용	발명품 가치 평가와 기술 거래는 지식 재산의 활용 수단이며, 그 가치를 증진시킨다.	·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 기술 거래
		지식 재산의 사업화와 창업은 지식 재산의 가치로 인한 부의 창출과 경영 활동을 통하여 인류 문명을 이끈다.	· 기업이 정신과 창업 · 사업화 과정 이해 · 기술 경영 이해 · 사업계획서 작성

4)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개의 발명교육센터를 운영 중임.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전시관	서울창천초등학교(서부)	아현중학교(서부)	서울과학고등학교
동부과학교육센터	서울노일초등학교(북부)	아주중학교(강동송파)	세종과학고등학교
남부과학교육센터	서울신창초등학교(북부)	인헌중학교(동작관악)	한성과학고등학교
	서울한남초등학교(중부)	성수중학교(성동광진)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계남초등학교(강서)	공진중학교(강서양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서울논현초등학교(강남서초)		
	서울돈암초등학교(성북강북)		
3	7	5	5

- 이에 동 조례안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시행 중인 발명교육 정책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을, 본칙 규정으로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7조),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안 제8조), 교육의 연수기회 제공 등(안 제9조), 선도학교 지정·운영(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여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⁵⁾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법」 제4조⁶⁾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관련 교육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7) 및 제33조 등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8~2022)'을 마련하였는데, 이 종합계획에는 '지식재산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사업을 통해 청소년 발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 선택교과인 '지식재산일반' 교과를 도입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종합계획에는 교원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대 및 사범대에 지식재산 과목을 개설하고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저작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6) 「발명교육법」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7)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 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표-3]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8~2022)

(전략 2)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 공공영역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양성: 초·중등 (예비)교원 대상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SW 관리자 대상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 교육대·사범대(기술·가정교육학과)에 지식재산 과목을 개설하여 예비 초·중등 교원의 발명교육 이수를 확대하고, 저작권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원 직무연수과정 지원

(전략 4) 현장·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인재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발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 선택교과인 '지식재산일반' 도입을 확대
- ※ 광역 거점별 '발명교육 통합 지원센터'설치를 검토하고, 청소년 발명교육 참여율을 제고 ('16) 5.7% ⇨ ('22) 200개교 도입
- ※ '지식재산일반' 도입 확대: ('18) 시행 ⇨ ('22) 200개교 도입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발명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서 발명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행계획에는 발명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계획만 제시되어 있을 뿐, 지식재산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특허 출원, 직무발명,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교육 전반에 관한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 제6조는 현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정책을 고려하여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3)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센터에서는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학전시관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 총 20개의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특허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미 발명교육센터에서는 발명교육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4] 발명교육센터의 학생 교육 필수과정

구분	기초과정	심화과정	특허과정	비고
이수시간	12시간	20시간	40시간	메이커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권장
교육인원	20명 내외	20명 내외	20명 내외	
프로그램 예시	-발명에 대한 입문과정 -발명 아이디어 창출 -발명과 지식재산 관계 이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상표권 이해 등	-발명에 대한 탐구과정 -발명원리 탐구와 문제해결 능력개발 -지식재산권 이해와 방어 전략 -실용신안특허디자인출원 등	-디자인씽킹 기반 아이디어 창출 -발명에 대한 창조과정 -발명창작 및 지식재산권 창출 내용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윤리 등	

- 따라서 동 조례안 제7조는 서울시교육청의 발명교육센터가 발명교육을 포함한 지식재산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17, 2020.11.10.).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1]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1.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명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